

하나 현금IC 카드 이용약관

제 1 조 적용범위

- ① 「하나 현금IC카드」(이하 “현금IC카드”라 함)란 IC칩이 내장된 플라스틱 카드로 하나은행(이하 “은행”이라 함)이 제공하는 카드를 말하며, 현금IC카드를 이용한 서비스는 본 약관을 우선 적용한다.
- ②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예금거래기본약관, 전자통장 특약, 입출금이 자유로운 약관 및 CD공동이용업무 시행세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IC 칩: 카드에 장착될 수 있는 집적회로(IC)를 말한다.
2. 카드출금 비밀번호: 현금IC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 등 자동화기기에서 인출 등의 거래시 이용하기 위하여 이용자가 직접 지정하는 4자리의 숫자로 구성된 비밀번호를 말한다.
3. PIN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 현금IC카드 발급시 이용자가 직접 지정하는 6자리의 숫자로 구성된 비밀번호를 말한다.

제 3 조 이용계약의 성립

이용자가 은행이 정한 “현금IC카드발급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고, 은행이 이를 접수·승인함과 동시에 이용자에게 현금IC카드를 교부함으로써 성립한다.

제 4 조 현금IC카드의 계좌 등록

- ① 현금IC카드에는 2계좌 이상 등록이 가능하며, 카드 1매당 최대 10계좌까지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② 이용자가 계좌를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 5 조 카드출금 비밀번호 및 PIN의 신고

현금IC카드의 카드출금시 이용할, 카드출금 비밀번호와 PIN은 은행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 6 조 현금IC카드에 의한 거래

- ① 현금IC카드는 통장이나 청구서 또는 수표의 제출 없이 현금자동지급기 등 자동화기기에 의하여 현금인출(자금이체포함) 및 조회 등의 거래를 할 수 있다.
- ② 서비스 이용시 은행은 PIN번호, 계좌번호, 카드출금 비밀번호가 사전에 은행에 신고된 자료와 일치할 경우 서비스 이용자를 신청인 본인으로 인정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현금IC카드에 계좌가 1개만 등록된 경우에는 PIN번호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 ③ 자동화기기의 장애로 인하여 자동화기기를 이용하는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기타 혼잡 등 청구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점 창구에 카드를 제시하여 거래를 할 수 있다.

제 7 조 현금자동지급기 거래명세 확인

현금IC카드의 이용시 현금자동지급기 등 자동화기기에서 제공되는 거래 명세에 의하여 이용 금액 등 거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제 8 조 변경, 사고 등의 신고

- ① 이용자는 현금IC카드에 계좌를 추가,삭제,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은행 영업점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한다.
- ② 현금IC카드의 분실,훼손,도난,PIN번호 누설 등 사고발생시에는 은행 영업점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 한 경우에는 전화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 9 조 현금IC카드의 재발급

은행은 이용자로부터 현금IC카드의 분실,도난,열실,훼손에 따른 재발급 요청을 접수한 경우 신고한 비밀번호를 대조하고,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로 주의깊게 본인을 확인한 후 재발급 한다.

제 10 조 현금IC카드 출금비밀번호 등의 오류

- ① 이용자가 일자에 관계없이 현금IC카드 출금비밀번호를 누적하여 3회 오류 입력시 또는 PIN을 누적하여 5회이상 오류 입력시에 은행은 현금IC카드를 이용한 거래를 제한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거래가 제한된 경우 해제를 위해서는 이용자 본인이 영업점을 방문하여 카드출금비밀번호, PIN을 변경 하여야 한다.

제 11 조 이용한도 및 이용시각

이용한도 및 이용시각은 현금카드 이용약관의 내용을 준수하며 은행의 홈페이지 및 영업점 자동화기기에 게시한다

제 12 조 수수료

- ① 현금IC카드의 신규발급 및 재발급시 이용자는 발급매수당 2,000원의 발급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자동화기기를 통한 거래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카드 이용약관의 내용을 준수하며 은행의 홈페이지 및 영업점자동화기기에 게시한다

제 13조 손실부담 및 면책

- ① 은행은 현금IC카드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금액과 1년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경과이자를 보상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전쟁, 테러, 또는 은행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정전, 화재, 건물의 훼손 또는 테러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2. 이용자가 현금IC카드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3. 제3자가 권한없이 이용자의 현금IC카드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PIN번호나 출금비밀번호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 ③ 이용자로부터 현금IC카드의 분실이나 도난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은행은 그 때부터 제3자가 현금IC카드를 사용함으로써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상한다.

제 14 조 현금IC카드의 반환

이용자는 예금의 해지시에는 현금IC카드를 거래점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 15 조 양도 또는 담보제공의 금지

현금IC카드는 양도나 담보제공을 할 수 없다.

제 16 조 카드의 이용제한

1회 300만원 이상의 금액이 송금,이체되어 입금된 경우 입금된 때로부터 해당금액 상당액 범위 내에서 10분간 자동화기기를 통한 인출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점권으로 입금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약관-12-44 (2012.05.04)